

**미국의 학교경찰관 프로그램과  
국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의 시사점**

**미국의 학교경찰관 프로그램과  
국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의 시사점**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책임연구관 유 지 웅**

# 목 차

<b>I. 서론</b> .....	<b>1</b>
1. 연구목적 .....	1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2
<b>II. 학교경찰관 제도의 개념과 선행연구 검토</b> .....	<b>4</b>
1. 개념 .....	4
2. 선행 연구 검토 .....	5
<b>III. 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b> .....	<b>7</b>
1. 학교담당경찰관(SROs) 제도의 시작 .....	7
2. 학교담당경찰관의 규모 .....	8
3. 학교담당경찰관의 역할과 임무 .....	11
4. 학교경찰관의 선발과 교육 .....	13
5.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과성 논의 .....	15
<b>IV. 국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도입과 운영계획</b> .....	<b>20</b>
1. 경찰청의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계획 .....	20
2. 학교경찰관 제도의 도입과정 .....	21
3. 학교경찰관의 유형과 역할 .....	22
<b>V.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의 시사점</b> .....	<b>27</b>

1.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 대책 수립의 당위성 .....	27
2. 연계활동 확대의 필요성 .....	28
3.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의 균형 .....	29
4. 학교전담경찰관 대상 교육과 훈련 .....	31
5. 인력 충원의 필요 .....	32
6. 배움터지킴이 제도와의 연계 .....	32
7. 인권 침해 소지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	33
<b>VI. 맺음말 .....</b>	<b>35</b>
<b>참고문헌 .....</b>	<b>37</b>

## <표 차례>

<표 1> 학교경찰활동의 세 주체 .....	23
--------------------------	----

## I. 서론

### 1. 연구목적

근래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12년 한 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한 해일 것이다.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연일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사들과 보도들이 이어지고 관련기관들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활발한 토론과 대응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이 연초에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써 연초에 학교 전담경찰관제도 운영계획을 밝히고, 지난 6월에는 학교 전담경찰관 발족식을 가졌다. 경찰청에서는 전국의 각 경찰서 단위에 1-2명 이상의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한 업무에만 전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합의하에 이뤄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장기적으로 최소 10개 학교당 1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시켜 나갈 방침이다.

지난 2005년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경찰관이 스쿨폴리스로 임명되어 학교 주변을 순찰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적은 있었지만, 현직 경찰

관이 학교와 연계된 경찰활동만을 전종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그런데 학교폭력의 문제는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나라와 지역에 따라 학교폭력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에서의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진지 오래이다. 이들 국가들에서 학교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는 거의 50년 전의 일이고, 미국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서 1990년대 말 학교경찰관을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수십 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학교경찰관 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학교경찰관제도 운영 경험은 우리나라에서의 학교경찰관 제도 운영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학교경찰관제도가 운영되는 방식, 구체적으로 학교경찰관 제도가 시작된 배경, 학교경찰관의 규모, 역할과 임무, 선발과 훈련 방식, 그리고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살핌으로써 우리나라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의 방향과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이 연구의 제 2장에서는 먼저 학교경찰관제도의 개념과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핀 후, 제3장에서는 미국에서 학교경찰관 제도가 시작된 배경 및 학교경찰관의 규모, 역할과 임무, 선발방식과 교육 방식을 살피고 더불어 미국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미국 학계의 논의들을 검토

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도입과 운영 계획,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논의를 통해 국내 학교전담경찰관의 성격을 살피고, 제5장에서는 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가 국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에서 주는 시사점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발전방안을 찾는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는 학술저널들과 관련 연구자료들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방식에 기초해 있으며, 국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의 학교전담경찰관, 여성청소년계 담당자들과의 면담이 이뤄졌다.

## II. 학교경찰관 제도의 개념과 선행연구 검토

### 1. 개념

학교경찰관 제도(또는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 Police-School Liaison Program)은 학교의 안전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제도이다.<sup>1)</sup>

이 제도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인데, 학교와 경찰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특별히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들 국가들에서 학교경찰관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심각한 학교폭력의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도 학교폭력이 심각성을 띠기 전에는 학교폭력의 해결은 학교에서 교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다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점차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학교와 경찰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 내의 폭력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곧, 학교경찰관 제도가 등장하게 된 것은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학교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1) 이 연구에서 학교-경찰연계제도는 학교경찰관 제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선행 연구자들은 학교경찰관제도를 '학교-경찰연계제도'로서 소개해 왔는데, 학교경찰관제도라는 용어와 의미상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학교경찰관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경찰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는데, 가장 일반화된 형태는 공립학교에 School Resource Officers(SROs)라고 불리는 학교경찰관을 배치한 것이다.<sup>2)</sup> 미국의 학교경찰관을 School Resource Officers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데, 학교에 배치된 경찰관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도 학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 주고<sup>3)</sup>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학교지원경찰관, 학교담당경찰관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인데,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특별히 학교담당경찰관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를 따라 학교담당경찰관으로 칭한다. 한편 영국에서는 학교에 배치된 경찰관을 일반적으로 School Liaison Officers(SLO)라고 칭한다. 군대에 연락장교(liaison officer)가 있는 것과 유사한 의미에서 학교에 파견된 경찰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2. 선행 연구 검토

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또는 학교-경찰 연계제도)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의 학교경찰관제도(또는 학교-경찰 연계제도)에 관한 국내 연구로서 박세정(1998)의 연구와 최종술의 연구(2012)가 있다.<sup>4)</sup> 박세정의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연구로서 의미

2) 이 제도를 미국에서는 School resource officer(SRO) program으로 부른다. 이 연구에서 미국의 학교경찰관제도는 SRO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3) 최종술, “미국의 학교-경찰 연계제도 및 한국의 학교폭력 해결책에 주는 시사점”,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제5호, 2012, 5면.

4) 박세정,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책으로서의 학교-경찰 연계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호, 1998; 최종술, “미국의 학교-경찰 연계제도 및 한국의 학교폭력 해결책에 주는 시사점”,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제5호, 2012.

를 갖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비교적 초기에 이뤄진 연구로서 1990년대의 상황에서 각국의 학교경찰관 제도 운영 현황을 잘 소개하고 있으나, 1990년대 말 이후 미국사회 전 지역으로 확대된 학교경찰관 제도의 상황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최근에 이뤄진 최종술(2012)의 연구는 박세정의 연구의 기초 위에서 최근 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그것이 한국의 학교폭력 해결책에 주는 시사점과 한국적 학교경찰제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미국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학교경찰관 제도의 사례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미국 학교경찰관 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기초 위에서 최근 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와 관련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한편, 특별히 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들을 통해 국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상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와 관련한 연구 동향을 개괄해 보면, 그 대부분의 연구는 학교경찰관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거나 학교에서의 학교담당경찰관(SROs)의 임무와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경향과 더불어서 학교와 경찰관 사이에 협력적 동역관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연구, 학교경찰관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들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한편, 비판적 시각에서는 학교경찰관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사소한 일탈행위를 범죄화한다는 논의를 비롯하여 학생들에 대한 체포건수가 늘어난다는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

### Ⅲ. 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

#### 1. 학교담당경찰관(SROs) 제도의 시작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는 학교 치안을 위한 학교경찰관 프로그램으로서 학교담당경찰관(SROs) 모델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 모델이 미국 사회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1950년대 후반기의 일이다.<sup>5)</sup> 그런데 이 제도가 미국사회에서의 학교경찰관 제도의 시작인 것은 아니다. 학교담당경찰관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경찰이 학교 안에서 법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Burke(2001)와 Girouard(2001)의 연구에 의하면<sup>6)</sup>, 인디애나폴리스 공립 학교경찰의 역사는 19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학교는 학교 경찰의 역할을 하는 “특별 조사관”을 10년 이상 고용하고 있었다. 1970년에 그 기관은 재조직되어 인디애나폴리스 공립학교경찰이 되었다. 다른 예로서, 로스엔젤레스 학교경찰국(Los Angeles School Police Department)은 원래 1948년에 경비부서(security section)로서 시작했다가 독립적인 경찰기관으로 변신한 것이다.

학교담당경찰관(SROs) 제도가 미국사회 전 지역으로 확대된 것은

5) Briers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미국사회에서 일반화된 학교담당경찰관(SROs) 제도는 1951년 영국 리버풀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미국에는 1958년에 도입되었다.(Briers, A.N., School-based police officers: What can the UK learn from the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 Management*, 5,2, 2003, 129-142).

6) Burke, Sean, The advantages of a school resource officer, *Law and Order* 49, 2001,73-75; Girouard, Cathy, School resource officer training program(FS 200105),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01.

1990년대 미국사회의 심각한 학교폭력 실태를 배경으로 한다. 미국 사회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서 학교 안에 무질서가 늘어난다는 보고서들이 있었는데, 급기야 1990년대에는 학교 내에서 몇 건의 총기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사회는 학교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학교에 출입하는 학생들의 무기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금속탐지기를 설치한다거나, 학생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무관용원칙을 시행하거나, 학교 순찰을 위해서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sup>7)</sup> 특별히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를 우려해 온 학부모나 학교 책임자들에게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매력적인 선택이 되었다.<sup>8)</sup> 최근 미국에서는 학교폭력과 각종 위법행동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학교안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학교에 전임 경찰관을 배치하는 추세이다.<sup>9)</sup>

## 2. 학교담당경찰관의 규모

미국에서는 근래 학교담당경찰관(SROs)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1999년에 이뤄진 조사에 의하면, 미국 전체 공립 중고등학교의 54%가 학교안전요원(security guards)이나 학교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2005년에 이뤄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68%로 증가했다.<sup>10)</sup> 미국 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학교담당경

7) Brown, Ben, Understanding and assessing school police officers: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m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 2006, p.592.

8) 학교경찰관제도를 도입하는 기본적인 철학은 학교폭력과 위법행동은 학교행정책임자와 학교 스태프, 학교 경찰관의 협력관계를 통해 더욱 잘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9) Herszenhorn, D.M., Students to get no warning before searches, New York Times On-Line, 2006, April 14.

10) Dinkes, Rachel, Emily Forrest Cataldi, and Wendy Link-Kelly, *Indicators of school*

찰관(SROs)이 활동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미국내 학교담당경찰관의 대표적 조직인 전국학교담당경찰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School Resource Officers)<sup>11)</sup>에서는 2008년에 당 협의회 소속된 학교담당경찰관 멤버수는 9,000명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 규모는 이 협의회에 소속된 학교담당경찰관 규모만 보여준 것으로서, 실제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학교경찰관 규모에 비하면 극히 보수적인 추정치이다.<sup>12)</sup>

Brown(2006)은 미국 전 지역 보안관사무실의 1/3이상과 모든 지역경찰 부서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 수는 모두 17,000명 이상이고, 공립학교에서는 3,200명 이상의 경찰관을 고용하고 있어서 미국 내에 20,000명 이상의 학교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한다.<sup>13)</sup> 그렇지만, 미국에는 서로 다른 유형의 학교 법집행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경찰관을 지칭하는 표준 용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파악한 숫자는 보수적인 추정치일 뿐이고 근래 들어서 학교담당경찰관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많은 수의 학교경찰관이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학교담당경찰관의 활동 정도는 지역별로 다르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명 혹은 여러 명의 학교담당경찰관이 한 학교를 맡고 있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한 명의 학교담당경찰관이 둘 이상의 학교를 맡

---

*crime and safety*,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U.S. Department of Educati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Office of Justice Programs, and U.S. Department of Justice, 2007, p.61.

11) 1990년대 미국사회 내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그 대책으로서 학교담당경찰관의 수가 증가하면서 1991년 학교담당경찰관(SROs)들은 협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 조직이 전국 학교담당경찰관협회이다.

12) Kupchik Aaron and Bracy Nicole L., To Protect, Serve, and Mentor?: Police Officers in Public Schools, Monahan Torin, Torres R.D.(Edited), *Schools under Surveillance: Cultures of Control in Public Education*, Rutgers University Press, 2010, p.23.

13) Brown, Ben, 앞의 글, p.592.

고 있기도 하다.<sup>14)</sup> 일반적으로 주요도시에서 학교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 학교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미국의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지역에서 학교폭력은 더욱 심각한 경향이 있는데, 학교폭력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학교경찰관의 수요는 높으며 학교경찰관제도는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서, 뉴욕시는 학교경찰관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속하는데, 뉴욕시에는 뉴욕시 경찰국 소속으로 학교안전부(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School Safety Division)가 있고<sup>15)</sup>, 약 5,000명의 학교안전요원<sup>16)</sup>과 200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7)</sup> 뉴욕시 경찰국 학교안전부 소속 학교경찰관이 관할하는 지역의 학교수는 약 1,500개 정도이다.<sup>18)</sup> 한편,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에는 로스엔젤레스 학교경찰국(The Los Angeles School Police Department, LASPD)이 지역 학교에 학교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 인적 구성은 340명의 경찰관과 147명의 학교안전요원으로 이뤄져 있다. 로스엔젤레스 학교경찰이 관할하는 지역의 학교와 시설수는 모두 1,030개이다. 미국에서 뉴욕과 로스엔젤레스는 학교경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속한다.

이밖에도 박세정의 연구에 의하면, 시카고 시의 경우 1개 학교에 2인의 학교경찰이 배치되어 있고, 내쉬빌시에서는 1개 학교에 학교경찰 1인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19)</sup> 요약하면, 미국 내 학교경찰

14) Kupchik Aaron and Bracy Nicole L., 앞의 글, p.23.

15) 뉴욕시 경찰국 학교안전부는 1998년 설치되었는데, 학교안전과 관련된 임무가 크게 확대되어 지금은 미국 내에서 학교와 연계된 최대의 법집행기관이다.

16) 뉴욕시 경찰국 학교안전부에 소속된 학교안전요원은 뉴욕시 공무원 신분이지만, 뉴욕시 특별순찰경찰관으로 배치되어 뉴욕주 치안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치안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진 학교안전요원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수갑을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학교안전요원은 경찰관과 구별하기 위하여 제복셔츠 색깔, 계급장을 다르게 하였으며 이용하는 차량도 경찰관 차량과 다르다.(최종술, 앞의 글, 10면).

17) 최종술, 위의 글, 10면.

18) 최종술, 위의 글, 9면.

제도는 대체로 학교담당경찰관(SROs)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는데, 지역마다 학교폭력 문제의 정도가 다르고, 지역마다 학교경찰관 배치 상황도 다르다. 미국 내에서의 학교경찰관 제도 운영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학교연계경찰관’(School Liaison Officers, SLOs)으로 지칭하는 학교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사한 성격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법 집행기관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지, 영국 내에 얼마나 많은 학교경찰관들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미국과 비교해서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1인의 학교경찰관이 담당해야 하는 지역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더욱 많다. 미국의 경우 학교경찰관의 역할과 임무는 학내의 질서유지와 법집행에 더욱 큰 비중이 두어지고 있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더욱 치중하는 영국과 비교해서 더욱 많은 수의 학교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

### 3. 학교담당경찰관의 역할과 임무

미국에서 학교담당경찰관(SROs)의 실제적인 임무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것은 법 집행자, 상담자, 교사의 역할이다.<sup>20)</sup>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 학교담당경찰관은 학교 내부 시설들을 순찰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한 범죄들을 조사하고, 학생들로부터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을 상담하고, 마약과 범죄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sup>21)</sup>

19) 박세정, 앞의 글, 234면.

20) Kupchik Aaron and Bracy Nicole L., 앞의 글, p. 23.

21) Girouard(2001)는 미국 사회에서 학교담당경찰관은 법 집행관, 상담가, 교사의 역할 외에도 경찰기관과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연락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Kupchik과 Bracy(2010)가 미국에서 학교담당경찰관의 실제적 임무를 참여관찰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교담당경찰관은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내 순찰활동, 행정적인 경찰업무 수행, 비교적 사소한 교내 사건 조사, 학생 상담과 일탈 예방 교육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2)</sup> 교내 순찰활동은 조사대상 학교담당경찰관들의 일상적인 임무였는데, 구체적으로 교내 건물 통로를 순찰하거나, 점심시간에 식당을 살피거나, 수업을 마치고 스쿨버스에 탑승하는 학생들을 감독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sup>23)</sup> 학교담당경찰관들이 순찰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교내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대개 자신의 사무실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업무에는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거나, 이전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거나, 학교에서 체포된 학생이 있을 때 체포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등의 행정적인 업무인데, 이러한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근무시간의 절반가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담당경찰관의 실제 일상적인 업무 가운데 하나는 학교 안에서 발생한 작은 사건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학교담당경찰관들은 절도가 의심되는 사건이나,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건, 마약이나 알콜 소지 등과 같은 비교적 작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미국사회에서 학교담당경찰관은 법집행자로서의 역할 외에도 상담가,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이나 학교 직원들에게 범죄와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학교연계경찰관은 미국의 학교담당경찰관(SROs)과 비교해서 그 역할과 임무의 비중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학교담당경찰관이

22) Kupchik Aaron and Bracy Nicole L., 앞의 글, p. 24.

23) 이러한 순찰활동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하나는 학생들에게 학교담당경찰관의 존재(즉, 교내에 경찰의 공권력이 존재한다는 것)를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에 대한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행정책임자를 돕는 것이다.

학교순찰이나 감독 업무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면, 영국의 학교연계경찰관은 예방활동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경찰관 제도 운영 목적에서도 확인되는데, 영국의 학교연계경찰 제도 운영 목적은 일차적으로 지역 청소년과 경찰 사이의 접촉과 협력의 확대, 의사소통 기회의 확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범죄를 줄이고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영국에서 학교경찰관의 역할은 법 집행자보다는 상담가, 교사의 역할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학교경찰관의 선발과 교육

미국에서 학교경찰관을 선발하는 방식은 해당 지역의 학교경찰관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에 따라 다르다. 학교경찰관의 주요 임무가 학교 안의 순찰과 질서유지에 있는 경우, 선발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의 전공이나 학력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며 별도의 훈련과정이 요구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부분의 학교경찰관이 부여받고 있는 역할과 임무는 학교 안에서의 법 집행 활동과 더불어 상담과 멘토링, 범죄예방 교육 활동을 포함한다. 법을 집행하는 일에 훈련된 경찰관이 학교 안에서 상담과 멘토링,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교경찰관 선발요건과 사후적인 훈련과정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경우 학교경찰관은 기존 경찰관 중에서 지원자 우선으로 선발되는데, 근무성과 근무경력 외에도 학력과 전공, 대인관계능력, 발표 능력 등이 선발기준에 포함된다. 근무성과 경력이 포함되는 것은 학교와의 연계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이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경찰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sup>24)</sup>

미국에서 학교경찰관으로 선발된 경찰관은 대부분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친다. 미국사회에서 학교경찰관을 훈련시키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회는 지난 2000년 학교경찰관을 훈련시키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정으로서 5백만달러, 2001년에는 3백만달러를 승인했을 정도이다.<sup>25)</sup>

학교경찰관으로 선발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내용을 보면, 소년법 체계 전반, 강의기법, 수업관리, 대인관계기법, 범죄예방교육(마약, 자살방지, 폭력조직 가담 억지, 개인 신변보호, 안전 운전 등) 등을 포함한다. 교육방식은 선임경찰관을 통해 배우는 방식(OJT)과 직장 밖에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받는 방식이 병행되는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예방교육, 예컨대 마약, 자살방지, 폭력조직 가담 억지 등의 교육은 직장 외부 교육을 통해 이뤄진다. 학교담당경찰관(SROs)협의체인 전국학교담당경찰관협회(NASRO)이나 전국학교폭력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등이 학교경찰관 교육을 담당하는 대표적 기관들이다.

뉴욕시 경찰국 학교안전부에는 정규 경찰관 외에 시공무원 신분의 학교안전요원이 학교경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sup>26)</sup> 이들은 뉴욕시 공립학교 내에서의 질서유지와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안전확보 역할을 맡고 있는데, 애초 정규경찰관으로 선발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sup>27)</sup> 뉴욕 경찰국 내의 학교안전요원 교육 훈련단(the School Safety Training Unit)이라는 기구는 학교안전요원을 교육하는 조직이다. 이곳에서는 신입 학교안전요원들이 학교안전부의 규정과 방침, 권한의 한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

24) 박세정, 앞의 글, 235면.

25) Brown Ben, 앞의 글, p.592.

26) 최중술, 앞의 글, 10면, 23면.

27) 학교안전요원은 채용과정에서도 의료, 심리, 체력, 성격 검사 등의 분야에서 소정의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훈련을 담당한다. 14주 동안의 기본교육과정에는 행태과학, 경찰학, 법, 치안관의 권한, 육체적 훈련과 전술 그리고 심폐기능소생법, 응급처치 등의 교육과정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교육과정 외에도 3개의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sup>28)</sup>

## 5.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과성 논의

선진국에서 학교경찰관 제도가 운영된 지 5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많지는 않았다.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대부분의 연구는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과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기본적인 논리는 학교경찰관이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더욱 잘 발견되고, 보고되고, 기록되고, 처리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학교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학교폭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경찰관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학교경찰관 제도가 학생들의 사소한 일탈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으며, 학교에 경찰관이 상주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과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 제도가 학교 주변에서의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Crouch와 Williams(1995)는 시카고의 학교경찰 동반자 프로그램이 범죄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서 연구하였는데, 4년간에 걸친 장기간의 연구 결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46% 가량의 범죄

28) 최종술, 앞의 글, 15면.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9)</sup>

Johnson(1999)은 미국 남부도시에서의 학교담당경찰관(SROs) 프로그램이 학교폭력과 혼욕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해당 지역에 학교담당경찰관이 배치되기 전(1994-1995년)과 배치된 후(1995-1996년)를 비교한 결과, 중 고등학교에서 주요범죄 건수가 3,267건에서 271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0)</sup>

Briers(2003)는 영국 런던의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학생, 학교 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얻은 양적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이 지역에서 학교경찰관 제도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31)</sup>

이러한 연구조사 결과들은 양적 자료에 기초하여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과성을 논의한 것들인데, 참여관찰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학교담당경찰관의 효과성을 논의한 연구도 있다. Kupchik와 Bracy(2010)의 연구가 그것인데, 이 연구는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과성 논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학교경찰관의 활동이 이 제도와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학교담당경찰관은 학교행정책임자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행정책임자들은 학교에 학교담당경찰관이 활동하고 있음으로써 외부적으로 자신의 학교가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얻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학교안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서 학교담당경찰관의 존재를 활용하고 있었

29) Crouch, E. & Williams, D., What cities are doing to protect kids, *Educational Leadership*, 52(5), 1995, 60-62.

30) Johnson, I. M., School violence: The effectiveness of a school resource officer program in a southern cit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7, 1999, p.189.

31) 한편 이 연구의 조사결과들은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학교경찰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며 정확히 학교경찰관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약간의 혼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 그밖에도 학교행정책임자들은 학교담당경찰관들로부터 학교내의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 조언을 받고 있었다. 이 조사를 통해 볼 때, 학교담당경찰관(SROs) 제도가 학교행정책임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제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담당경찰관과 학교행정책임자 사이에 권위자로서의 역할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행정책임자로부터 전혀 다른 반응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학교경찰관 제도가 경찰기관에도 유익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경찰기관의 입장에서는 학교담당경찰관을 학교에 상주시켜 학생들과 일상적인 접촉을 갖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경찰의 법집행 활동을 더욱 잘 이해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고, 경찰을 적대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교담당경찰관을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역 기관인 교육기관에 상주시킴으로서 경찰은 이들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알게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요구들을 알 수 있게 되며, 학교 밖에서 발생한 범죄를 탐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학교경찰관제도가 학교행정책임자나 경찰기관에 주는 유익에 비교하면, 학생 당사자들에게는 그 효과가 덜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우선 긍정적인 효과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데 있었다. 학교담당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해 있는 것이 학생들에게 이질감이나 불편함을 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담당경찰관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안전하게 해 줄 것이라고 믿지 않더라도, 자신의 학교에 학교담당경찰관이 상주해 있는 것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즉, 학생들이 학교담당경찰관의 존재로 인해 더욱 안전감을 느낀다는 사실에서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담당경찰관의 멘토 역할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학생들은 긍정적이지만, 일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 조사에서는 학교담당경찰관들도 멘토로서의 역할에 가장 큰 고충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역할과 멘토로서의 역할은 때로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sup>32)</sup>

학교경찰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학교 주변에서의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학교경찰관이 학교행정책임자나 경찰기관, 그리고 학생 모두에게 유익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한편에는 학교경찰관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그 예로서 Schreck, Miller, Gibson(2003) 등은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학교 내 금속탐지기 설치나 학교경찰관 제도 등이 Johnson(1999)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sup>33)</sup> 또한 몇몇 범죄학자들과 법률학자들은 학교안전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몇 가지 대책들, 특별히 학교담당경찰관의 수적 증가가 실제적으로는 학생들의 행위를 범죄화하고 학교에서의 학생 체포 건수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담당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는 것이 일반화되면, 이전까지 학교 교장과 교사들에 의해서 다루지던 훈육 문제들이 이제는 학교 경찰관에 의해서 더욱 많이 다루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sup>34)</sup> 그래서 학생들간의 사소한 실랑이가 폭행으로 취급되면서 단순한 일탈행

32) 특별히 이러한 역할 충돌은 멘티가 되는 학생들이 자신들 혹은 친구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털어놓았을 때 일어난다. 여기에서 학교담당경찰관은 정당한 법집행을 해야 할 의무를 갖는데, 그것은 자신의 멘티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된다. 또한 학생들을 멘토링하는 일에 충분한 경험과 훈련을 받지 않은 학교담당경찰관들에게 있어서 멘토링은 쉽지 않은 도전이다.

33) Schreck, C. J., Miller, J. M., & Gibson, C. L., Trouble in the school yard: A study of the risk factors of victimization at school, *Crime and Delinquency*, 49, 2003, 460-484.

34) Hirschfield, P. J., Preparing for prison? The criminalization of school discipline in the USA. *Theoretical Criminology*, 12, 2008, 79-101.

위 때문에 학교에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범죄 기소 사건 건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대변하는 주장의 논지는 경찰이 학교에 상주함으로써 실제로 학교안전을 위협하지 않은 행위들을 범죄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sup>35)</sup> 그런데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Theriot(2009)의 연구는 의미 있는 실증적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sup>36)</sup> 이 연구는 애초 학교경찰관의 존재가 학생들에 대한 체포 건수를 늘릴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학교담당경찰관(SROs)이 학교에 배치됨으로써 전체 학생 체포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학교담당경찰관이 배치된 학교에서 무기 소지로 체포된 학생들의 사례는 오히려 더욱 적었다. 이 연구결과는 소위 ‘범죄화 가정’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오히려 학교담당경찰관의 효과성 논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

35) Berger, Randall R. The “worst of both worlds”: School security and the disappearing fourth amendment rights of students, *Criminal Justice Review*, 2003, 28:336-354.

36) Theriot Matthew T., School resource officers and the criminalization of student behavio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 2009, pp. 280-287.

## IV. 국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도입과 운영계획

### 1. 경찰청의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계획

경찰청에서는 올해 1월 26일 학교폭력과 관련한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찰서별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이들에게 피해 사례 접수, 범죄예방교육, 가·피해자 관리 등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sup>37)</sup> 이후 3월 경찰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은 학교와 경찰의 가교역할을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경찰서별로 1명 이상의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 사이에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학교 내에서 자체 처리가 어려운 심각한 학교폭력이나 교사 폭력으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참여시켜 가·피해학생간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재발방지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up>38)</sup>

또한 올해 6월에는 교육당국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학교폭력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sup>39)</sup>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제도 운영은 경찰과 학교(혹은 교육당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

37) 경찰청, 보도자료, 2012.1.

38) 경찰청, 보도자료, 2012.3.

39) 경찰청과 교과부, 지방청과 시도교육청, 경찰서와 교육지원청간의 업무협의를 정례화한 것은 경찰과 교육당국의 공동대응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는 전담경찰관을 통해서 학교폭력에 공동대응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범죄예방교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가·피해 학생 지원 등 학교폭력 업무에 전종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306명에서 514명으로 증원 배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모두에게 학교폭력 예방사·상담사 자격증(2급) 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은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경찰 인력 증원을 통해서 학교전담경찰관 514명을 정원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2. 학교경찰관 제도의 도입과정

최근 경찰청에서 도입하기로 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애초 서울 경기 대전 충북지방 경찰청 단위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으로서 추진되어 오던 것이었다. 이들 지방청 가운데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맨 처음 지정 배치한 곳은 경기지방경찰청이다. 지난 2011년 3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6명의 경찰관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임명되어 학생생활인권지원센터가 설치된 수원, 용인, 구리·남양주, 성남, 시흥, 의정부 등 권역별 6개 지역 교육청에 1명씩 배치되었다. 이들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교육, 범죄예방교실 운영, 학교 순회 순찰, 학생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주력해 왔다.<sup>40)</sup>

2012년 1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스쿨폴리스(학교지원 경찰관)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스쿨폴리스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배치되어 각급학교 범죄 예방교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의 임무

40) 한겨레신문, “경기 ‘학교전담경찰’ 떴다”, 2011.3.29.

를 담당한다.<sup>41)</sup> 지역 교육청에 1명의 경찰관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시작한 ‘학교전담경찰관’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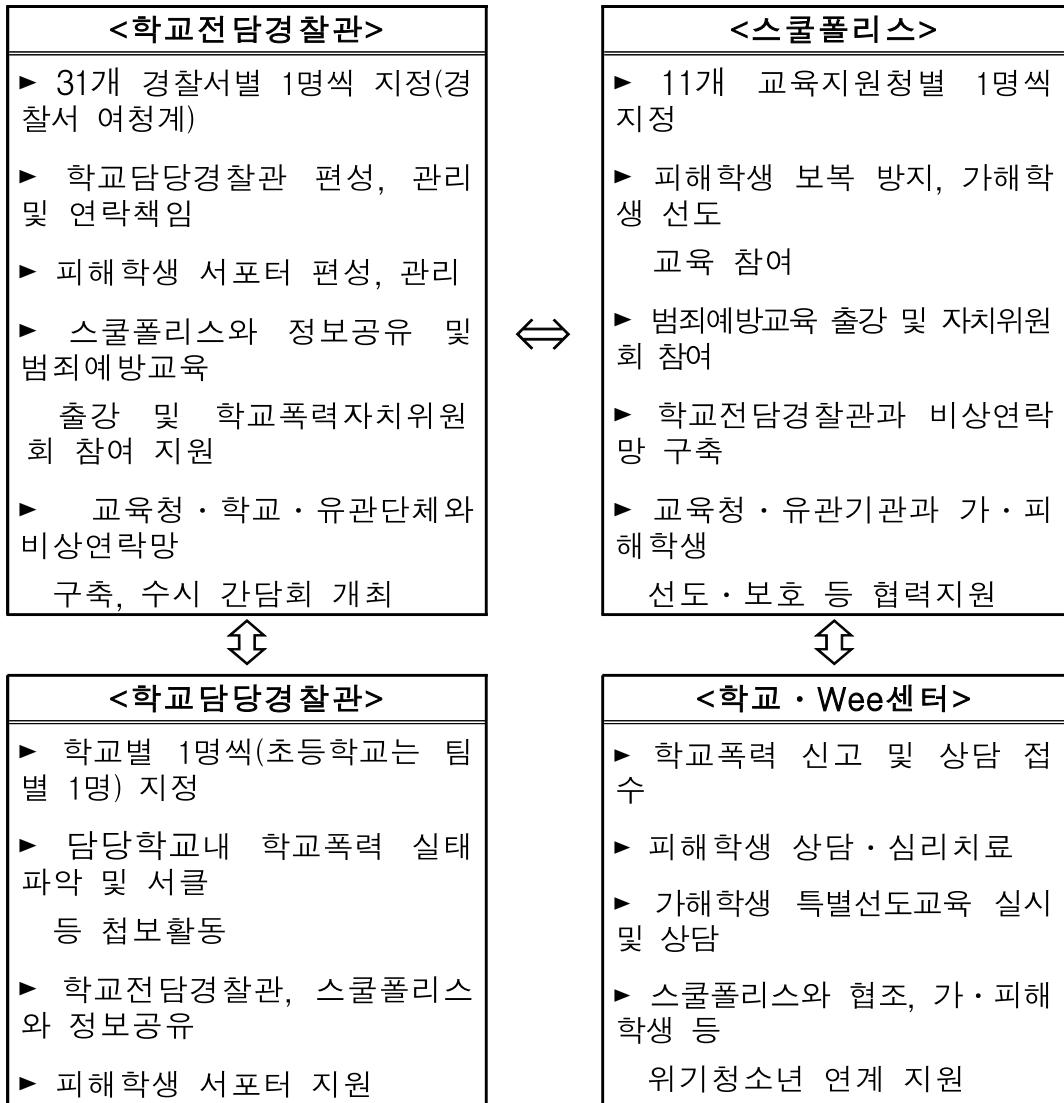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스쿨폴리스(학교지원 경찰관)제도 외에도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별로 여성청소년 소속 경찰관 1명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 역할과 임무는 스쿨폴리스와 유사하다. 11명의 스쿨폴리스가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원청과의 연계활동에 주력하는 반면,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별로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은 관할 지역내에서의 학교경찰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스쿨폴리스, 학교전담경찰관과는 별도로 각 경찰서에는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학교담당경찰관’이 있다. 따라서 서울경찰청의 경우에는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 학교전담경찰관, 학교담당경찰관 등 각각 역할이 다른 세 주체가 학교경찰관으로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서울경찰청을 제외한 다른 지방경찰청에는 학교전담경찰관, 학교담당경찰관 등 두 주체가 학교경찰관으로 지정 배치되어 있다.

### 3. 학교경찰관의 유형과 역할

현재 지방청을 포함하여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경찰관제도는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되, 활동영역에서 서로 구별된 세 주체,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 학교전담경찰관, 학교담당경찰관을 통해서 운영되어 오고 있다. 지역에 따라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를 지정 배치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담당경찰관이 학교경찰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아래 <표1>은 서울지방경찰청 스쿨폴리스, 학교전담경찰관, 학교담당경찰관의 임무를 정리한 것이다.

41) 서울경찰청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는 교육학, 심리학 등을 전공했거나 심리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자격증을 보유자 중에서 선발되었다(서울지방경찰청, 브리핑, 2012.1.3.)

<표 1> 학교경찰활동의 세 주체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보도자료, 2012.1.3.

각 주체별로 활동영역과 부여된 임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는데, 먼저 스쿨폴리스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상주하면서 학교경찰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은 지난 2010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처음으로 시범적 운영되기 시작하였다가 2011년 정식으로 발족하였는데, 이후 서울, 대전, 울산, 충북지방경찰청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가 학교전담경찰관, 학교담당경찰관과 크게 구별되는 것은 활동영역의 차이이다.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는 경찰청과 교육청이 서로 업무협약을 맺어 경찰관을 교육청에 지정 배치하고,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과 선도활동을 전담하게 하는 제도이다.<sup>42)</sup> 다시 말하면 스쿨폴리스는 경찰기관과 교육기관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에 서로 긴밀한 협력체계 속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그 협약에 따라 교육청에 지정 배치되어 학교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경찰관이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교사 상담사 등 자격을 취득한 경찰관을 지정 배치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교육학과나 청소년(지도)학과, 상담심리학과 전공자이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찰관 중에서 선발하였다.<sup>43)</sup>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스쿨폴리스의 주요 업무는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하여 가해·피해학생을 지원하며, Wee센터 등과 연계하여 선도처분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선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내 청소년 관련기관과 ‘비행청소년 솔루션협의회’를 운영하는 것 등이다.<sup>44)</sup> 스쿨폴리스는 지역교육청에 상주해 있으면서 교육기관과의 상시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학교경찰관과 구별된다.

42) 경기지방경찰청, 보도자료, 2011.5.18.

43) 서울지방경찰청 스쿨폴리스의 경우 전공학과는 상담·심리학 3명, 청소년(지도)학 2명, 교육학 1명, 사회복지학 1명, 기타 4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자격증은 교원자격증 1명,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명, 심리사(범죄·상담심리) 자격증 5명 등이다(서울지방경찰청, 브리핑, 2012.1.3.).

44) 서울지방경찰청, 보도자료, 2012.1.3.

스쿨폴리스와 활동임무가 유사하면서도 활동영역에서 구별되는 학교경찰관으로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 있다.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은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만 전종하는데, 전국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1명 이상씩 지정되어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담당경찰관 편성 및 관리 책임, 피해학생 서포터 편성 관리, 스쿨폴리스와 정보 공유 및 범죄예방교육 활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지원 활동 등을 맡는다.<sup>45)</sup> 올해 6월 5일 경찰청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가졌는데, 경찰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향후 학교전담경찰관은 개인별 담당학교를 지정받아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업무를 맡게 되는데, 그 주요 역할은 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 활동, 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가해 피해 학생간의 분쟁 조정 활동, 3) 학교의 생활지도교사 등과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학교폭력 피해 사례 및 폭력서클 관련 정보 취득, 4)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활동, 5) 멘토-멘티 결연 등 피해학생 지원 활동, 가해학생 대상 선도프로그램 운영, 6) 그밖에 교사가 요청할 경우, 사안 조사, 경미사건에 대한 가·피해 학생에 대한 중재 등에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sup>46)</sup>

학교경찰제도의 세 번째 주체로서 학교담당경찰관이 있다. 학교담당경찰관제는 1995년 학교폭력 관련 대책으로서 도입한 제도인데, 전국의 각 경찰서별로 1개 학교당 1명씩 학교담당경찰관을 지정하여 개별 학교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게 한 제도이다. 학교담당경찰관은 대개 형사계 소속 경찰관이 맡고 있는데, 형사업무와 수행하면서 학교경찰관 업무

45) 서울지방경찰청, 보도자료, 2012.1.3.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2월 당시 지방청별로 전국 최대 규모인 68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 발족했는데, 범죄예방활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피해자 분쟁조정, 범죄예방교실 개최, 피해 학생 대상 상담활동 외에도 아침·저녁으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맞추어 학교 주변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46) 경찰청, 보도자료, 2012.6. “학교폭력 근절대책, 학교와 손잡고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를 추가적으로 맡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학교담당경찰관은 초·중등학교 1개교에 1명씩 지정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관할지구대에서, 중·고등학교는 경찰서 형사계에서 맡고 있다. 이들의 임무는 담당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불량서클 등의 첩보활동이다.

경찰청의 학교전담경찰관 발대식 관련 보도자료에서 밝힌 학교전담경찰관의 주요 임무와 역할은 예방교육, 상담, 분쟁조정, 피해학생 지원 및 가해학생 선도 활동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와 역할은 미국의 학교경찰관제도보다는 영국의 학교경찰관제도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sup>47)</sup>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에서 주목되는 것은 학교내 순찰활동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과 상담자의 역할이 강조된 영국의 학교경찰관제도에서도 순찰 기능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영국의 학교경찰관제도보다도 더욱 학교경찰관의 교육, 상담자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순찰 단속 위주의 경찰활동에서 예방교육, 학교와의 연계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47) 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는 교육과 상담, 멘토링 활동도 하고 있지만, 학교 안에서의 질서 유지 등 범집행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영국의 학교경찰관 제도는 범 집행 기능보다는 교육과 상담 등 예방활동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다.

## V.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의 시사점

이 장에서는 미국의 학교경찰관제도 운영의 경험과 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국내에서 도입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의 시사점과 바람직한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 대책 수립의 당위성

미국의 학교경찰관제도가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할 때,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나라와 지역마다 학교폭력의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나라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제도들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범죄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사회, 특별히 학교행정책임자들, 학부모들,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학교폭력 대책으로서 학교경찰관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미국사회 학교에서 마약, 무기소지와 사용, 갯단, 폭력, 살인 등의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1990년대 초 미국사회 내에서 날마다 10만 명의 총과 60만 자루의 칼이 학교 안에 반입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고, 2천명의 학생들이 매시간 학교주변에서 신체적인 공격을 당하고, 9백 명의 교사들이 매 시간 위협을 당하고, 40명의 교사는 매 시간 신체적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sup>48)</sup> 미국사회의 이러한 심각한 학교폭력 실태가 충기로 무장한 학교경찰관을 학교에 상주시키는 형태의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학교경찰

48) Lantier, L., Peacing our schools back together, *Education Digest* 60, 1995, pp. 14-18.

관이 영국의 학교경찰관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법집행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된 것은 미국사회의 학교폭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즉, 학교폭력의 상황은 각 나라와 지역마다 다르고 그 나라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학교폭력 대책도 다르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되,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대책은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실태와 실정에 맞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 2. 연계활동 확대의 필요성

선진국에서 학교경찰관제도를 도입하게 된 데에는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교사들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경찰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 학교와 경찰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와 경찰의 연계, 구체적으로 학교경찰관 제도가 학교 주변에서의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에서 교육청,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 상담, 중재 활동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와 연계한 경찰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학교경찰관 제도는 학교와 경찰의 연계에서 그치지 않고, 학부모, 지역사회 지도자들, 의료기관, 교정기관을 아우르는 데까지 그 연계의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미국의 시카고에서 시행한 학교경찰관 프로그램에는 학교경찰관, 학교보안요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포함되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한 지 4년 만에 학교 안에서의 살인, 구타, 강도, 그밖에 심각한 범죄가 46% 감소하였다.<sup>49)</sup> 또

한 조운오(2012)는 대부분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보호처분을 통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학교-경찰 중심의 대책 이외에 지역사회 교정을 활용한 학교폭력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 학교와 경찰, 보호관찰관이 어떻게 협력하는가 하는 것이 학교폭력 근절의 관건이라고 강조한다.<sup>50)</sup> 학교폭력을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은 학교와 경찰의 연계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와 경찰, 보호관찰관의 연계,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3.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의 균형

올해 6월 경찰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향후 학교전담경찰관은 개인별 담당학교를 지정받아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업무를 맡게 되는데, 그 주요 역할은 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 활동, 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가해 피해 학생간의 분쟁 조정 활동, 3) 학교의 생활지도교사 등과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학교폭력 피해 사례 및 폭력서클 관련 정보 취득, 4)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활동, 5) 멘토-멘티 결연 등 피해학생 지원 활동, 가해학생 대상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곧 향후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는 교육, 상담, 분쟁조정,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선도 등으로 요약된다. 미국과 영국 학교경찰관의 임무에서 역할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법 집행자, 상담자, 교사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서 보면, 우리나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에서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은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술한 대로 각 나라마다 학교폭력의 수준이 다르고 학교경

49) Crouch and Williams, 앞의 글, 1995.

50) 조운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 교정연구, 제55호, 2012, 55면.

찰관의 역할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은 학교경찰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 본래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없지 않다. 학교폭력의 대책이 감시와 통제를 중심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감시와 통제가 중심이 된 학교폭력 대책도 문제일 것이지만, 감시와 통제가 배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학교내에서의 경찰의 순찰활동이 범죄 감소에 미치는 효과성은 차치하더라도, 그것이 학생들에게 이질감과 불편함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학교경찰관의 존재가 심리적으로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up>51)</sup>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에서 법 집행, 상담, 교육 기능의 균형과 조화는 필요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에서 법 집행자적 기능이 미미한 데에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이제 도입된 상태에서 인력이 크게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각 경찰서당 1-2명에 불과한 인력으로 관할 지역 학교들을 순찰하며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는 것이다. 현 상태에서도 각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범죄예방교육 부담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실에서 순찰기능의 확대는 더욱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전담경찰관의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은 먼저 인력충원이 이뤄진 이후에야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 계획하는 대로 점진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이 이뤄지게 되면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와 역할에서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의 보완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51) Kupchik와 Bracy, 앞의 글, 2010.

#### 4. 학교전담경찰관 대상 교육과 훈련

올해 6월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향후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는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상담, 분쟁조정,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선도 활동 등으로 요약된다.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부여된 이러한 임무들 가운데 교육, 상담, 분쟁조정 역할은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에 훈련된 경찰관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역할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발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공자, 자격증 취득자를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학교폭력과 관련한 상담활동, 가해자와 피해자 분쟁 조정 역할은 더욱 구체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선발된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사후적인 재교육과 훈련과정은 필요하다. 특별히 미국과 영국의 학교경찰관이 법집행자로서의 역할 외에 교육, 상담, 멘토링의 임무를 맡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학교전담경찰관에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임무도 부여받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복적 사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회복적 사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분쟁 조정자의 역할이어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한다.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과 더불어 분쟁 조정자의 역할을 기대하려면, 그에 맞는 전문적 훈련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에서 학교경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직무교육에는 소년법체계, 강의 기법, 수업관리, 대인관계기법, 범죄예방교육 등을 포함한다. 범죄예방교육 중에서도 자살, 폭력조직 가입억지 등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이 이뤄진다. 자살 방지, 폭력조직 가입억지를 위한 범죄예방교육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목해야 할 범죄예방교육 내용이 될 것인데, 전문기관을 통한 학교전담경찰관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sup>52)</sup>특히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부여된 임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5. 인력 총원의 필요

지난 6월 경찰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은 모두 306명으로서 경찰청에서는 인력 증원을 통해 514명으로 증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력 증원이 이뤄지더라도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21.6개 학교를 담당하는 셈이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부여된 역할은 학교폭력과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분쟁조정,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선도 등이다.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21.6개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업무량이 과중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다가 전술한 바대로 법 집행자로서 역할을 보완하여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의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인력 증원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증원은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일탈과 범죄를 줄여나가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주어진 역할은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포함하여 위기청소년의 규모를 줄여나감으로서 장기적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6. 배움터지킴이 제도와의 연계

미국의 로스엔젤레스와 뉴욕시에는 정규경찰관 외에도 학교안전요원이

52) 뉴시스, 여야, 정부 학교폭력대책 실효성 비판, 2012.9.26.

학교경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학교안전요원은 시공무원 신분으로서 정규경찰관과 계급장과 복장, 차량 등에서 구별되지만,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쳐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정규경찰관과 함께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정규경찰관과 학교안전요원으로 구성된 학교경찰관의 조합을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배움터지킴이의 조합으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배움터지킴이의 인적 구성은 초기에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 퇴직경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퇴직교원을 중심으로 그 인적 구성상의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보완을 통해 잠정적인 형태로나마 학교전담경찰관의 부족한 인력과 역할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과 관련한 교육, 상담, 분쟁조정,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선도 등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학교주변 순찰활동은 제도보완을 통해 배움터지킴이에게 맡김으로써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7. 인권 침해 소지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미국에서 학교경찰관제도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확대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학교경찰관 제도 확대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한 우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학교경찰관제도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그러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무장한 학교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순찰과 감시 등 법집행 활동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비교해서 국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는 범죄예방교육, 상담, 분쟁조정, 선도 활동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이 두어지고 있고, 학교경찰관의 규모도

크지 않아서 그러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을 소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학교전담경찰관의 규모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역할의 조정이 이뤄져서 법 집행자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게 되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인권 침해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될 것이다.

## VI. 맺음말

경찰청에서는 향후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교육당국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학교폭력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방향은 학교경찰관제도 내지 학교-경찰 연계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린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안정적인 학교경찰관제도 운영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방향 설정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학교경찰관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학교폭력의 감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학교경찰관 제도 이해당사자들인 학교 교사,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학교경찰관제도가 교육당국, 학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가능할 것이다. 학교경찰관 제도 운영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관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대책으로서 마련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무엇보다도 경찰이 학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응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어서 경찰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오늘날 학교폭력은 경찰의 개입으로 근절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찰 공권력의 강력한 학교폭력 척결의지 속에서, 일진 조직 와해,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서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학교폭력 근절은 학교와 경찰, 더 나아가서는 교정기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학교와 경찰의 연계는 차후 교정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나갈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세정,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책으로서의 학교-경찰 연계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호, 1998.
- 조운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 교정연구, 제55호, 2012.
- 최종술, 미국의 학교-경찰 연계제도 및 한국의 학교폭력 해결책에 주는 시사점,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제5호, 2012.
- 한상암·신성원,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1호, 한국경찰학회, 2006.
- Berger, Randall R. The “worst of both worlds”: School security and the disappearing fourth amendment rights of students, *Criminal Justice Review*, 2003.
- Briers, A. N., School-based police officers: What can the UK learn from the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 Management*, 5,2, 2003.
- Brown, Ben, Understanding and assessing school police officers: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m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 2006.
- Burke, Sean, The advantages of a school resource officer, *Law and Order* 49, 2001.
- Crouch, E. & Williams, D., What cities are doing to protect kids, *Educational Leadership*, 52(5), 1995.
- Dinkes, Rachel, Emily Forrest Cataldi, and Wendy Link-Kelly,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U.S. Department of Educati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Office of Justice Programs, and U.S. Department of Justice, 2007.

Girouard, Cathy, School resource officer training program(FS 200105),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01.

Herszenhorn, D.M., Students to get no warning before searches, New York Times On-Line, 2006, April 14.

Hirschfield, P. J., Preparing for prison? The criminalization of school discipline in the USA. *Theoretical Criminology*, 12, 2008.

Johnson, I. M., School violence: The effectiveness of a school resource officer program in a southern cit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7, 1999, p.189.

Kupchik Aaron and Bracy Nicole L., To Protect, Serve, and Mentor?: Police Officers in Public Schools, Monahan Torin, Torres R. D.(Edited), *Schools under Surveillance: Cultures of Control in Public Education*, Rutgers University Press, 2010.

Lantier, L., Peacing our schools back together, *Education Digest* 60, 1995, pp.. 14-18.

Schreck, C. J., Miller, J. M., & Gibson, C. L., Trouble in the school yard: A study of the risk factors of victimization at school, *Crime and Delinquency*, 49, 2003.

Theriot Matthew T., School resource officers and the criminalization of student behavio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 2009.

<기타>

경기지방경찰청, 보도자료, 2011.5.18.

경찰청 보도자료, 2012.1.

경찰청 보도자료, 2012.3

경찰청, 보도자료, 2012.6.

서울지방경찰청, 보도자료, 2012.1.3.

뉴시스, 여야, 정부 학교폭력대책 실효성 비판, 2012.9.26.

한겨레신문, “경기 ‘학교전담경찰’ 났다”, 2011.3.29.

책임연구보고서 2012-11

## 미국의 학교경찰관 프로그램과 국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의 시사점

---

---

201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조 요 셉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http://www.psi.go.kr)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